

# 「국채사무취급절차」 주요 개정 내용

## I 개정 필요성

- 「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」(이하 「규정」) 개정(2021.1.1일 시행, 기획재정부 고시) 사항을 「국채사무취급절차」(이하 「절차」)에 반영하고, 관련 서식 및 용어를 정비할 필요

## II 주요 개정 내용

### 1 「규정」 개정 사항 반영

- 물가연동국고채 입찰방식이 비경쟁인수에서 경쟁입찰로 변경(「규정」 제9조, 제13조 등)됨에 따라 「절차」에서 물가연동국고채 비경쟁인수 관련 내용을 삭제
  - 일반인 인수신청 대상에서 물가연동국고채를 삭제(제13조 제2항)하고, 관련 서식에서도 해당 내용을 삭제(<별지 제3-3호 서식>)
  - 상위직급자의 거래 승인 대상에서 물가연동국고채 일반인 한도 및 배정 관리 업무를 삭제(제47조 제3호)

### 2 관련 서식 및 용어 정비

- 국고채전문딜러 앞 안내 공문\*에 따라 사용하여 온 '국고채권 비경쟁인수 신청(취소)서'를 「절차」에 반영

\* 「국고채전문딜러에 대한 비경쟁입찰권한 부여제도」 시행에 따른 안내(증권팀-1029, 2006.8.31)

- 국고채권을 비경쟁인수하고자 하는 국고채전문딜러의 '국고채권 비경쟁인수 신청(취소)서' 제출의무 조항(제13조 제3항\*) 및 동 신청(취소)서식(<별지 제3-4호 서식>) 신설

\* 현행 제13조 제3항은 동 조 제4항으로 항 내림

- 발행일 전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선매출종목의 국고채권 일반인 우선배정 신청 마감시각(입찰일 09:00)\*을 추가하여 업무담당자의 혼선을 방지('국고채권일반인우선배정신청서' <별지 제3-3호 서식>)

\* 「규정」 제12조 제6항(입찰대행 전문딜러는 일반인의 응찰내역을 입찰일 당일 10:00까지 입찰업무를 처리하는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발행일 전에 입찰이 이루어지는 선매출종목의 경우에는 09:00까지 실시한다.)

- 국고채전문딜러의 전자입찰자 등록신청 거래대상을 명확화

- '국채'를 '국고채권', '재정증권'으로 수정하여 업무담당자의 혼선을 방지('전자입찰자등록신청서' <별지 제5호 서식>)

### Ⅲ 시행일

- 시행일 : 2022. 2. 4.